

폐수배출관리 규정

제정·개정 이력	
2026.01.01	최초 제정
담당부서	관리부

I. 폐수배출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클린포트의 폐수배출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물 환경 보전에 노력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주)클린포트의 전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며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수(물환경보전법제2조4호)”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하수(하수도법제2조1호)”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3. “수질오염물질(물환경보전법제2조7호)”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4. “폐수배출량(물환경보전법시행령별표13)”이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 (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중 최종 방류구를 통해 나간 물의 양을 말한다.
5. “1일 최대폐수량(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4)”이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모든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합산한 양을 말한다.
6. “공공폐수처리시설(물환경보전법제2조17호)”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